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 토 보 고

#### I. 주요내용

-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 담배의 자동판매기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8호).
- 개정안에 따른 담배의 자동판매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기까지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 II. 검토의견

현행법 제9조제18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원칙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sup>.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되어<sup>2)</sup>,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현행법 제9조제18호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도 용어상 결국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므로<sup>3)</sup>,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개정안의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확대된 담배의 정의를 반영한 것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 현행법상으로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논의가 시간이

---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처벌됨.

「담배사업법」 제2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소요되고 있어 교육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설명함.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은 정)